

비위면직자취업제한사무운영예규중 개정 예규

비위면직자취업제한사무운영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82조의 2·제83조·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89조의 2·제90조에 따른 서울메트로(이하 “공사”라 한다)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위면직자”란 공사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던 자로 한다.
5.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나.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② 사장은 공사 임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및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 2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3조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라 함은 부서의 장 및 소속직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임원(본부장 포함)은 공사 전체의 업무를 말하고, 파견근무자의 경우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 ② 제3조 다른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비위면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비위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공기관·부패행위 관련 기관·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장을 거쳐 시장에게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6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 1. 당연 퇴직·파면 및 해임의 사유가 제2조제4호에서 정의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 2. 취업하려는 기관이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취업하려는 기관이 제2조에 따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4조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5.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조에 따른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8조제1항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퇴직일('16. 00. 00)부터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의 관련성 여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퇴직 전 소속기관(☎ 000-000-0000)

※ 붙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서식)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퇴직일('16. 00. 00)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취업제한기관 : 법 제82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참조

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의 관련성 여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 요구 및 고발조치(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퇴직 전 소속기관(☎ 000-000-0000)

※ 붙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1. 요청인 인적사항

소속기관		주 소	
직 위			
직 급		연락처	직장 Tel.
성 명			주택 Tel.
생년월일		취업제한사유 발생일	

2. 면직사유

3. 취업제한 업체여부 확인

취업예정 기관명	사업장 주소	예정 직위 및 담당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①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장) 귀 하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공공기관명, 년도)

기관명			퇴직 전 소속부서	
인적사항	성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직 급	
취업제한사유	취업제한사유		(당연퇴직, 파면, 해임, 벌금300만원 이상 선고)	
	취업제한사유 발생일		. . .	
취업제한사유의 부패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의견(O, ×)				
작성일 : 작성자 : (부서명) 성명 , 연락처 :				